

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(신·구조문대비표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조(<u>적용대상물품</u>) (생 략)</p> <p>제2조의2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고세율원재료”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<u>시장접근물량 초과</u>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 략)</p>	<p>제2조(<u>적용대상품목</u>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의2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</u>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<u>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</u> 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조문명 정비</p> <p>○ 정의 재정비</p> <p>* FTA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세율적용 우선순위 사항 반영</p>

제4조(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) ① 제3조제1항의 방법과 같이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·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·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(확인)서 2부.

2.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1부.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신고
(확인)서 --.

<삭 제>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○ 폐지

제5조(관세등의 환급신청) ① 환급 신청인이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(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)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: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(확인)서
2.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: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서류

제5조(관세등의 환급신청) ① -----

 -----.

1. -----
 --- 제4조제1항제1호의 서류
2. -----
제4조제1항제1호-----

○ 조문 정비

○ 별지 제2호서식 폐지 반영

② (생략)

제6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
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
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
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
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
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
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재검토기한) -----

2024년 7월 1일-----

-----.

부칙(관세청고시 제2024-00호(2024. 5. .)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5월 일
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
최초로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
제조·가공하려고 제조장 관할지세관장
에게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○ 부칙 신설

(별지 제1호서식)

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(확인)서

①신청인	상 호	대 표 자	
	주 소	사업자등록번호	
② 수출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내역			
품 명	규 격	수출수량	선적기일
			비 고
③ 고세율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원재료 내역			
신고번호	면허일자	수입수량	납부세액
			관세 내국소비세 계
			비 고
④ 원재료의 구매 및 제품매출내역(확인에 필요한 기간)			
원재료 구매내역		제품매출내역	
신고번호	면허일자	수 량	생 산 수 출 내 수 비 고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「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·가공할 것을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 세 관 장 귀 하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「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·가공할 것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○○ 세 관 장

직인

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서식]

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(확인)서

①신청인	상 호	대 표 자	
	주 소	사업자등록번호	
② 수출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내역			
품 명	규 격	수출수량	선적기일
			비 고
③ 고세율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원재료 내역			
신고번호	면허일자	수입수량	납부세액
			관세 내국소비세 계
			비 고
④ 원재료의 구매 및 제품매출내역(확인에 필요한 기간)			
원재료 구매내역		제품매출내역	
신고번호	면허일자	수 량	생 산 수 출 내 수 비 고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「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·가공할 것이며 신고 내용과 제출한 자료 등이 허위인 경우 본 환급과 관련한 환급세액의 추징 및 이 법 또는 「관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하겠으니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 세 관 장 귀 하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「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·가공할 것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○○ 세 관 장

직인

○ 별지 제2호서식 폐지에 따른 신고 내용 정비

(별지 제2호서식 각서)

각 서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「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회사가 귀 세관에 확인 신청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고세율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반드시 사용 및 사용할 것임이 틀림없으며, 만일 신청내용과 제출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되면 본건 환급과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정처분은 물론, 「관세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하며,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상 호
 주 소
 성명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 하

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[별지 제2호서식] <삭 제>

○ 폐지